

【별지】

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시간(단, 심한 장애)

항목	구분	지 원 기 준	지원시간 (월)	비고	
1	활동지원 1~13구간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 하는 경우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등 또는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80	
2		1인 가구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 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지원대상자 중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3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제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사실확인 및 서류 확인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지원대상자 중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60	
4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제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사실확인 및 서류 확인		
5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지원대상자 중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50	
6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7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제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사실확인 및 서류 확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지원대상자 중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30	
8		1인 가구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 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9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제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사실확인 및 서류 확인	20	
10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지원대상자 중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11		1인 가구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 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20	
12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제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사실확인 및 서류 확인		
13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지원대상자 중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20	
14	1인 가구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 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20		
15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제공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사실확인 및 서류 확인		20	
16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 보건소 지원대상자 중 진단서 상병코드 확인	20		
17	1인 가구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 체류(원양어업, 해외취업 등), 실종 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 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학교, 직장생활, 복지시설(주3회 이상) 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20	
18	지적·자폐·뇌병변 장애인 (성인)	부부 양쪽 모두 심한 장애인인 경우	20		
19	지적·자폐·뇌병변 장애아동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20	
20	지적·자폐·뇌병변 장애인 (성인)	한부모 가정인 경우	20		
21	지적·자폐·뇌병변 장애아동	특수학교(급) 재학생 - 단, 만 20세까지에 한하며 졸업 예정자인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		20	
22	지적·자폐·뇌병변 장애인 (성인)	중복장애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20		
23	지적·자폐·뇌병변 장애아동	중복장애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20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증명서, 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확인)